질병관리청

질 병 관 리 청

국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동행 질병관리청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결핵예방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2094호) 공포 및 시행 안내

「결핵예방법」 일부개정법률(제22094호)가 다음과 같이 개정·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,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, **시도**는 **관할 기초자치단체 등**에 **안내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개정이유

○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 또는 고용주가 취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**공포일**: 2026. 10. 20.
○ **시행일**: 2027. 4. 21.(공포 후 6개월)
○ **개정사항**: 법 제13조제4항 개정

당초	변경
제13조(업무종사의 일시 제한) ① ~ ③ (생 략)	제13조(업무종사의 일시 제한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**비전염성결핵환자에 대하여 결핵환자라**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.	④ 사업주 또는 고용주는 **비전염성결핵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결핵환자 또는 잠복결핵감염자라**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
붙임 결핵예방법 제개정문 공포문(제22094호) 1부. 끝.

질 병 관 리 청 장

수신자 중앙행정기관, 부내 및 소속기관, 16개 시도, 관련 협회 및 학회

주무관 **김윤경** 서기관 **박장호** 결핵정책과장 전결 2026. 10. 21. **김지영**
협조자
시행 결핵정책과-4276 (2026. 10. 21.) 접수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/ http://kdca.go.kr
전화번호 043-719-7326 팩스번호 043-719-7292 / dbsrud0815@korea.kr / 비공개(5)